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 번호	8268
----------	------

제안연월일 : 2008. 2. 22.

제안자 : 정치관계법특별위원장

제안경위

가.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2007. 7. 3)에서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68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2007. 7. 5)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가 구성됨.

나. 제268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제2차(2007. 7. 26, 8. 2) 및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2007. 9. 11)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안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2008. 2. 21)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함.

제안이유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해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운영과 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계상시 계상단가는 소비자물가변동율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후원회의 기부내역 수시보고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소액(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 기부자가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기부 영수증발급 절차를 개선함(안 제5조·제17조).
- 나.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사용 보장을 위하여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다. 후원회의 기부내역 수시보고제도를 폐지함(안 제10조제3항).
- 라. 정당의 운영과 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시 그 계상단가는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다만, 연간 10만원 이하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그 당비영수증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비영수증은 전자적 형태로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교부할 수 있되,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중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를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로, “국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를 “국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로, “있으며, 이 경우 그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를 “있으며,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제2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중앙당후원회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을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으로, “금액”을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억5천만원”을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정당의 중앙당후원회와 시·도당후원회 및”을 “정당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와 시·도당후원회, 지역구에”를 “지역구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관할 구역 안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당해 선거구에”를 “해당 선거구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후원회에 연간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후원인이 그

정치자금영수증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무정액영수증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할 수 있되,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제작한 무정액영수증을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을 “후원회를 둔”으로, “등록된 중앙당 또는 당선된”을 “당선된”으로,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본다.”를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를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회의원후보자등”을 “대통령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밑 외의 부분 중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당원”을 “당원”으로 하고, 같은 호 밑의 단서

중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로서”를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나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 또는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밑 외의 부분 중 “당원이 아닌 경우와 정당이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를 “당원이 아닌 경우”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후원회지정권자(정당을 제외한다)”를 “후원회지정권자”로, “국회의원후보자등과”를 “대통령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 및”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대표경선후보자 및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당대표경선후보자·대통령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예비후보자”로, “낙선”을 “당선 또는 낙선”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12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800원을”을 “보조금 계상단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800원씩을”을 “보조금 계상단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계상단가는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정책연구소”를 “정책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후보

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를 “정책연구소”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중 “후원금, 기탁금”을 “기탁금”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원회”를 “국회의원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나목 본문 중 “120만원(중앙당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후원회지정권자(정당을 제외한다)”를 “후원회지정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본문 중 “중앙당과 그 후원회”를 “중앙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중앙당과 그 후원회는”을 “중앙당은”으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120만원(중앙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를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로 한다.

제51조제3항제1호 중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1항·제4항,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제3항,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2항·제3항 본문, 제20조(후원회의 합병 등)제1항 후단”을 “제7조제1항·제4항, 제19조제2항·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해당 신고자가 제2항의 납부 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채 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는 무정액 영수증에 대하여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정당과 후원회에 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직선거법」 제25조제2항 「국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의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가 분구, 통·폐합으로 조정된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후원회 중 제7조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

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후원금을 기부한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후원회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자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1호 및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회계보고 대상기간에 후원금을 기부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당비영수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 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p> <p>1. <u>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를 포함한다), 시·도당</u></p> <p>2. (생략)</p> <p><u><신설></u></p> <p>3. ~ 6. (생략)</p> <p>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①· ② (생략)</p> <p>③후원회를 둔 <u>국회의원이 대통 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 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국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u></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p> <p>----- ----- -----.</p> <p>제6조(후원회지정권자) ----- ----- ----- -----.</p> <p><u><삭제></u></p> <p>2. (현행과 같음)</p> <p><u>2의2.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 자등”이라 한다)</u></p> <p>3. ~ 6. (현행과 같음)</p> <p>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u>국회의원이 대통 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 보자</u>----- <u>국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후보자</u></p>

현 행	개 정 안
<p><u>선후보자</u>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의 대표자는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와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 ⑤ (생략)</p> <p>제9조(후원회의 사무소등) ①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p> <p>1. <u>중앙당후원회</u></p> <p><u>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광역시·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u></p> <p>2. (생략)</p> <p>3. <u>제1호·제2호</u> 외의 후원회</p>	<p><u>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u>----- -----<u>있으며,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u></p> <p><u>이 경우 그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u>-----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후원회의 사무소등) ①----- ----- ----- ----- -----.</p> <p><u><삭 제></u></p> <p>2. (현행과 같음)</p> <p>3. <u>제2호</u> -----</p>

현 행	개 정 안
<p>사무소 1개소</p> <p>②후원회의 사무소와 연락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모두 합하여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u>중앙당후원회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u>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생 략)</p> <p>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① .</p> <p>② (생 략)</p> <p>③<u>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금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 때에는 그 때마다 그 내역을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생 략)</p> <p>②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u>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u>·당대표경선후보자·국회의원후보자 등 및 시·도지사후보자의 후원</p>	<p>-----</p> <p>②-----</p> <p>-----</p> <p>-----</p> <p>-----<u>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u>·<u>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u>-----</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① .</p> <p>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u>대통령후보자등</u>·<u>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u>-----</p> <p>-----</p>

현 행	개 정 안
<p>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중앙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u></p> <p>2. (생략)</p> <p>③ ~ ⑥ (생략)</p> <p>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p> <p>①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p>	<p>-----</p> <p>-----</p> <p>-----</p> <p>-----.</p> <p>1. <u>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u></p> <p>2.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p> <p>①-----</p> <p>-----</p> <p>-----</p> <p>-----</p> <p>-----</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이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p> <p>1. <u>중앙당후원회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u></p> <p>2. <u>시·도당후원회는 5억원</u></p> <p>3. <u>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u></p> <p>4. <u>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u></p> <p>5. (생략)</p> <p>② ~ ④ (생략)</p>	<p>----- -----.</p> <p><삭 제></p> <p><삭 제></p> <p>3. <u>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u></p> <p>4. ----- -----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p> <p>5.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p> <p>1. 대통령선거</p> <p>후보자를 선출한 <u>정당의 중앙당후원회와 시·도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u></p> <p>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p> <p><u>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와 시·도당후원회,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u></p> <p>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p> <p><u>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관할 구역 안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u></p>	<p>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 ----- -----.</p> <p>1. ----- -----<u>정당의</u>----- ----- -----</p> <p>2. ----- <u>지역구에</u>----- ----- ----- -----</p> <p>3. ----- <u>해당 선거구에</u>----- ----- ----- ----- -----</p>

현 행	개 정 안
<p>③무정액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p> <p><u><단서 신설></u></p> <p>④ (생략)</p> <p>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익명기부 등으로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여 당해 후원회가 보관하여야 한다.</p> <p>⑥ ~ ⑫ (생략)</p> <p>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해</p>	<p><u>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③----- ----- ----- ----- -----.</p> <p><u>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제작한 무정액영수증을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제1항 본문----- ----- ----- ----- -----.</p> <p>⑥ ~ ⑫ (현행과 같음)</p> <p>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 -----후</p>

현 행	개 정 안
<p><u>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입기관의 합동회의의 합병결의 또는 대의기관이나 수입기관의 존속결의로써 합당으로 신설 또는 흡수하는 정당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후원회는 합병전의 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u></p> <p><u>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기부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p> <p>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경</p>	<p>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 ----- -----</p>

현 행	개 정 안
<p>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 에 따라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 까지 처분하여야 한다.</p> <p>1. 후원회지정권자가 <u>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당원인 경우</u>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u>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로서</u> 어느 하나의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해산되지 아니한 후원회에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p> <p>2. 후원회지정권자가 <u>당원이 아닌 경우와 정당이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u></p>	<p>----- ----- ----- -----.</p> <p>1. -----<u>당원</u>----- ----- ----- ----- -----<u>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나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 또는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로서</u>----- -----.</p> <p>2. -----<u>당원이 아닌 경우</u></p>

현 행	개 정 안
<p><u>제2호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u></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 및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또는 당대표경선에 참여하여 <u>낙선</u>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잔여재산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p> <p>1. · 2. (생략)</p> <p>④ ~ ⑦ (생략)</p> <p>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① (생략)</p> <p>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배분·지급하는 때에는 1회 <u>120만원</u>을 초과하여 기탁한 자의</p>	<p>③-----</p> <p>-----</p> <p><u>당대표경선후보자·대통령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예비후보자</u>-----</p> <p>-----</p> <p>-----</p> <p>-----</p> <p>-----<u>당선 또는 낙선</u>-----</p> <p>-----</p> <p>-----</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u>300만원</u>-----</p>

현 행	개 정 안
<p>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 ----- ----- ----- -----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5조(보조금의 계상) ①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u>800</u>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실시로 선거권자 총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p>	<p>제25조(보조금의 계상) ①----- ----- ----- -----보조금 <u>계상단가를</u>----- ----- ----- ----- ----- ----- -----.</p>
<p>②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공직선거</p>	<p>②----- -----</p>

현 행	개 정 안
<p>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동시지방선거는 하나의 선거로 본다)마다 <u>800원씩을</u> 추가한 금액을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③ (생 략)</p> <p>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p> <p>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p>	<p>-----</p> <p>-----</p> <p>-----</p> <p>-----</p> <p>-----<u>보조금 계상단가를</u>-----</p> <p>-----</p> <p>-----.</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계상단가는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p> <p>①-----</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1. <u>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대표자</u></p> <p>2. ~ 6. (생략)</p> <p>②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u>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u>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두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 ⑤ (생략)</p> <p>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u>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후원회, 후</u></p>	<p>----- ----- ----- -----.</p> <p>1. <u>-----정책연구소-----</u> ----- -----</p> <p>2. ~ 6. (현행과 같음)</p> <p>②----- ----- -----<u>대통령후보자</u> <u>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u> <u>자후원회</u>-----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u>정책연구소</u>----- ----- ----- -----</p>

현 행	개 정 안
<p>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은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p>	<p>----- ----- ----- ----- ----- -----.</p>
<p>1. 정당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p>	<p>1. ----- ----- ----- ----- -----</p>
<p>가. 수입</p> <p>당비, <u>후원금</u>, <u>기탁금</u>, 보조금, 차입금, 지원금 및 기관지의 발행 그 밖에 부대수입 등 수입의 상세내역</p>	<p>가. ----</p> <p>-----<u>기탁금</u>----- ----- ----- -----</p>
<p>나. (생략)</p>	<p>나. (현행과 같음)</p>
<p>2. ~ 4. (생략)</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40조(회계보고) ①회계책임자는</p>	<p>제40조(회계보고) ①-----</p>

현행	개정안
<p>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u>정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u></p> <p>가. · 나. (생략)</p> <p>4. · 5.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책임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때</u></p> <p>3. ~ 5. (생략)</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p>	<p>-----</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국회의원후원회</u>-----</p> <p>-----</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4. · 5. (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삭제></p> <p>3. ~ 5. (현행과 같음)</p> <p>③-----</p>

현행	개정안
<p>하여 회계보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생략)</p> <p>나. 정치자금의 수입내역</p> <p>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u>120만원(중앙당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u>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와 수입일자 및 그 금액을, 그 이하 금액의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일자별로 그 건수와 총금액. 다만, 당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다. (생략)</p> <p>2. <u>후원회지정권자(정당을 제외한다)</u>·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공직선거의</p>	<p>----- -----.</p> <p>1. ----- 가. (현행과 같음)</p> <p>나. ----- ----- <u>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u>----- ----- ----- ----- ----- ----- ----- ----- -----.</p> <p>다. (현행과 같음)</p> <p>2. <u>후원회지정권자</u>----- ----- -----</p>

현 행	개 정 안
<p>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호에 의한다)</p> <p>가. · 나. (생략)</p>	<p>-----</p> <p>-----</p> <p>-----</p> <p>-----</p> <p>-----</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p> <p>-----</p> <p>-----</p> <p>-----</p> <p>-----.</p>
<p>1. ~ 4. (생략)</p> <p>5.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u>중앙당과 그 후원회에 한한다</u>). 다만,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p> <p>-----</p> <p>-----<u>중앙당</u>-----</p> <p>-----</p> <p>-----</p> <p>-----.</p>
<p>6. · 7. (생략)</p> <p>⑤ · ⑥ (생략)</p>	<p>6. · 7. (현행과 같음)</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p> <p>①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p>	<p>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p> <p>①-----</p>

현행	개정안
<p>⑤ ~ ⑨ (생략)</p> <p>제5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p>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u>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1항·제4항,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제3항,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2항·제3항 본문, 제20조(후원회의 합병 등) 제1항 후단,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보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자</u></p> <p>2. ~ 9. (생략)</p> <p>④ ~ ⑦ (생략)</p> <p>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 선거관리</p>	<p>⑤ ~ ⑨ (현행과 같음)</p> <p>제5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u>제7조제1항·제4항, 제19조제2항·제3항 본문</u>----- ----- ----- ----- ----- ----- ----- ----- -----</p> <p>2. ~ 9. (현행과 같음)</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p>

현 행	개 정 안
<p>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정치자금 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 ----- ----- ----- ----- ----- ----- ----- ----- ----- -----</p>
<p><u><신 설></u></p>	<p><u>②</u> <u>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③</u> <u>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해당 신고자가 제2</u></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항의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u></p> <p><u>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u></p>